# 김포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도로, 하수도) 결정(변경)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

의 안 번 호 제3303호

제출년월일 2023. 9. . 제 출 자 김포시장

#### 1. 제안사유

가.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56-3번지 일원에 기존 하수도로 통합 결정 된 진입도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도로와 하수도로 각각 구역계를 분리 결 정하여 효율적 관리체계 수립 및 명확한 관리주체를 설정하고자 함.

#### 2. 근거법령

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(지방의회의 의견 청취)

#### 3. 일반현황

가. 위 치 :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56-3번지 일원

나. 규 모: - 도로 L=38m, A=546㎡(신설)

- 하수처리시설 6,281 m²

[기정: 6,803㎡ → 변경: 6,281㎡, 감) 522㎡(7.7%)]

다. 시 행: 김포시 맑은물사업소장(하수과)

#### 4. 추진실적

가. 2023. 6. 12. : 김포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도로, 하수도) 결정(변경) 입안신 청서 제출 (하수과→도시계획과)

나. 2023. 7. 28. : 관계부서(기관)협의(~'23. 8. 21.)

다. 2023. 7. 27. : 주민의견 청취(김포시 공고 제2023-1675호)

[공고기간: '23. 7. 27. ~ '23. 8. 10.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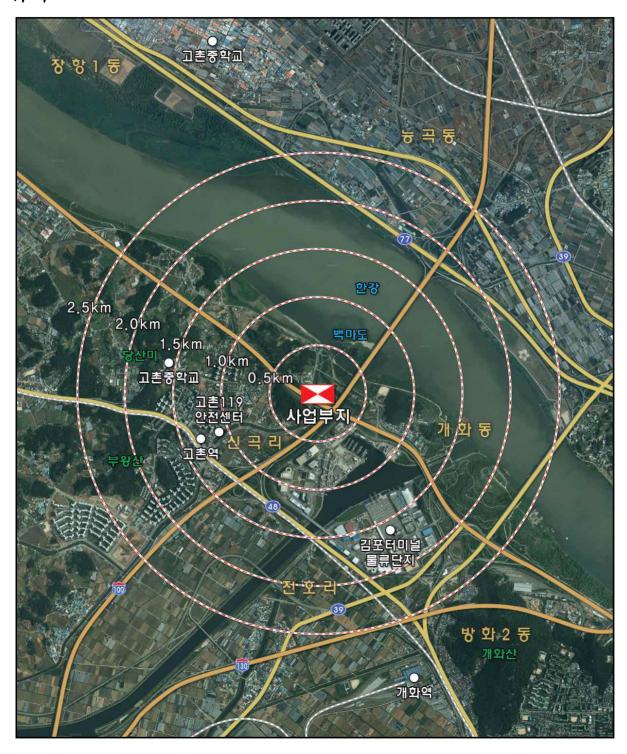
[결 과 : 의견없음]

## 5. 향후 추진계획

가. 2023. 9. :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
나. 2023. 10. : 김포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도로, 하수도) 결정(변경) 고시

## 6. 위치도



## 7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

가.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조서 및 사유서

#### 1) 교통시설

가) 도로 결정 조서

	규 모				연장			사용	주요	최초		
구분	둥급	류별	번호	폭원 (m)	기능	178 (m)	기점	종점	형태	경과지	역조 결정일	비고
신설	중로	3	65	14	국지 도로	38	고촌읍 신곡리 127-15	고촌 레코파크 (공공하수 처리시설)	일반 도로	-	-	-

#### 나)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 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결정내용	결정사유
중3-65호	도로	·도시계획시설(도로)신설 L=38m, B=14.0m	·기존 하수도로 통합된 시설을 분리 결정하여, 운영 및 관리의 효율화 수립

#### 2) 환경기초시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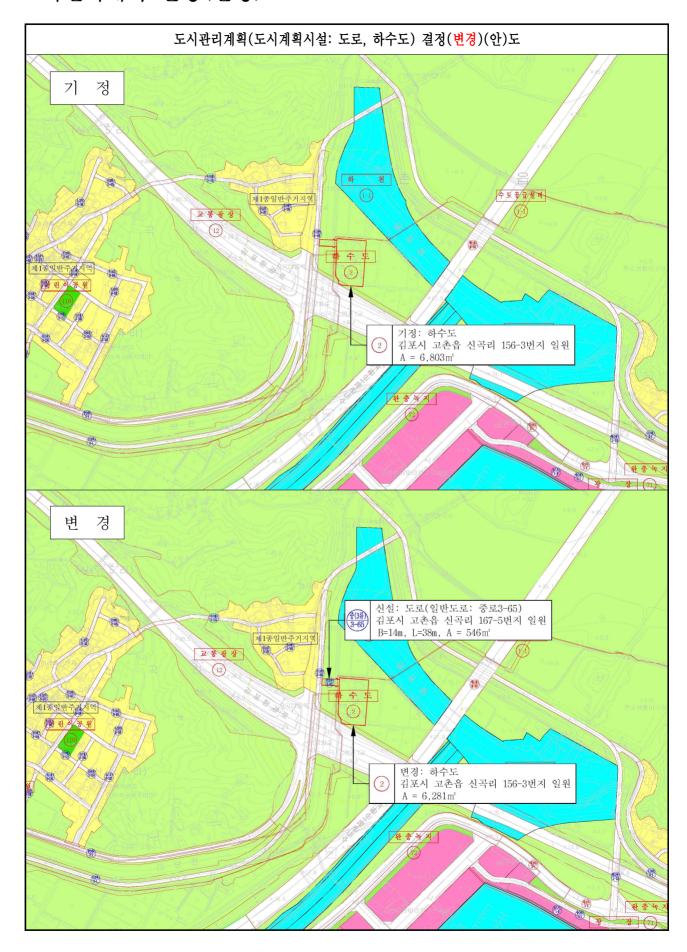
가) 하수도(공공하수처리시설) 결정(변경)조서

	도면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 적(m²)			최초	.3	
구분	표시 번호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결정일	비고	
변경	2	하수도	공공하수 처리시설	고촌읍 156-3번	신곡리 지 일원	6,803	감)522	6,281	김포시 고시 제2005-125호 (2005.11.14.)	

### 나) 도시계획시설(하수도)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결정(변경)내용	결정(변경)사유		
2	하수도 (공공하수처리시설)	<ul> <li>하수도(공공하수처리시설) 구역계 변경</li> <li>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56-3번지 일원</li> <li>면적 : 기정) 6,803㎡ 변경) 6,281㎡ 감) 522㎡</li> </ul>	· 하수도로 통합 결정된 도로 및 하수도의 구역계 분리결정으로 효율적 관리체계 수립 및 명확한 관리주체 설정		

## 8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



## 9. 현황사진

#### 가. 조망현황

• 주변 지역에서의 조망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오픈공간 등 실제 조망이 예상되는 4개의 예비조망점(A, B, C, D)을 최종 조망점으로 선정함

최종조망점 선정

최 종		구분	이격거리	비고	
조망점	조망권	위치	(m)	7125	
A	근경	사업대상지 남측	10		
В	근경	사업대상지 동측	30		
С	근경	사업대상지 북동측	50		
D	원경	사업대상지 남서측	200		



< 조망점 위치도 >



조망점 현황사진 >

#### 10. 의회의견 청취 관계법령 발췌

- 가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(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
  - ⑥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<u>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·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</u>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나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(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
  - ① 법 제28조제6항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다만, 제25조 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하다.
  - 1. 법 제36조부터 제38조가지, 제38조의2, 제39조,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용도지역·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. 다만,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·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경우로서 해당 용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하여 도시·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
  - 2.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
  -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·군관리 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. 다만,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고대로 도시·군계획시설 결정(도시·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·군관리계획결정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·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파. 하수도(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)

소	관 실·과·소	도시계획과		
	실·과·소장	도시계획과장		
입	성 명	양 수 진		
아	팀 장	도시계획팀장		
빈	직위·성명	장 경 철		
자	담 당 자	지방시설서기		
	성명·전화	박희락(☎2325)		